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만료일이 도래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제6호)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
- 일반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안 제7조제3항)
 - 기금 관련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의 통합기금 운용 심의 대행 근거 삭제
-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9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12조제1항)
- 용어,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안 제3조~제5조, 제7조, 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만료일이 도래한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지출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이며,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 대행을 금지하고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세부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아울러 매년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를 통해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보고·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